

10. 2003년도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(안)

심 사 보 고 서

2003. 9. 19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
재무건설위원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년 9월 2일 · 종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03년 9월 18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34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제1차(2003. 9.19) 재무건설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제안설명자 : 재무국장 황 의 진)

가. 제안이유

- 승인2동사무소, 복지시설 등 종합복합시설을 건립코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와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의 취득에 따른 2003년도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구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승인2동 청사 및 문화·복지·체육·행정 등 다기능 복합청사 건립에 적합한 정방형의 부지로서 토지활용도가 높고 주민접근이 비교적 용이한 위치로 지역주민의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코자 함

다. 관계법규

- 지방재정법 제77조, 동법시행령 제84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-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: 검토보고서 참조

(보고자 : 전문위원 정 성 수)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: 생략

5. 討 論 要 旨 (없 음)

6. 修 正 案 의 要 旨 (없 음)

7. 審 査 結 果 : 원 안 가 결